

【 11 】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2000. 3. 28

제출자 양주군수

□ 개정이유

도로법의 개정('99. 2. 8. 법률 제5914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99. 8. 6. 대통령령 제6510호)시 도로 점용에 관한 규정이 개선됨에 따라 동법령과 맞지 않는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함(안 제4조).
- 나.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할 자가 납부기간 내에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가산금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 다. 점용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여할 자가 납부기간 내에 점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토록 함(안 제6조제2항).
- 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안 제8조).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한다.

제2조의 조명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을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으로 하고, 동조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법 제20조의2”를 “법 제80조의2”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제2항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한다.

제3조의2 제1항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제4조제2항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4호”로 한다.

제4조제4항중 “부당이득금액”을 “변상금”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동조제3항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 할 자가 납부기간내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점용료, 변상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제1항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을 “도로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한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점용료산정기준료(제3조 관련)

(금액 : 원)

점용률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변압器. 무선전화기자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 전용휴대전화기자국. 교통량검지기. 주차메타기. 우체 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기타이와유사한것	1개	1년	600
	공중전화			900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m ²	1년	24,100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 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멘홀). 전력구. 통신구. 기타이와유사한것	지름 0.1m이하 지름 0.1m초과 0.2m이하 지름 0.2m초과 0.4m이하 지름 0.4m초과 0.6m이하 지름 0.6m초과 0.8m이하 지름 0.8m초과 1.0m이하 지름 1.0m초과 2.0m이하 지름 2.0m초과 3.0m이하 지름 3.0m초과	길이 1m	150
				300
				600
				900
				1,200
				1,500
				2,250
				3,750
				5,250
				200
	어스양카. 암거 기타 이와 유사한것	지름 0.1m이하 지름 0.1m초과 0.2m이하 지름 0.2m초과 0.4m이하 지름 0.4m초과 0.6m이하	길이 1m	450
				900
				1,350
				1,800
		지름 0.8m초과 1.0m이하 지름 1.0m초과 2.0m이하 지름 2.0m초과 3.0m이하 지름 3.0m초과	1년	2,250
				3,350
				5,600
				7,850

3. 광고탑. 광고판.간판 (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아취. 기타이와 유사 한 것.	광고탑,광고판.간판.(돌 출간판을 포함한다)	일시설치한것 (1월미만 점용)	표시면적 $1m^2$	1일	100
		기 타	표시면적 $1m^2$	1년	15,0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2,500
	현 수 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 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m^2$	1일	50
		기타용도			100
	아 취	도로횡단	표시면적 $1m^2$	1년	30,000
		기 타			15,000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m^2$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진 입 로	점용면적 $1m^2$	1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4. 주유소 · 주차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화물터미널 · 자동차 수리소 · 승강대 · 화 물적차장 · 휴게소 기 타 이와 유사한시설		철도 ·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m^2$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m^2$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3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공중또는지하에설치하는통로	점용면적 $1m^2$	1년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7. 노점 · 자동판매기 · 상품 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 수선대	1년	점용면적 $1m^2$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노점 · 자동판매기 · 상품진열대				
8. 공사용 판자벽 · 발판 · 대기 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점용한 것	점용면적	1일		100
	기 타	$1m^2$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밀에 설치하는 사무소 · 점포 · 창고 · 자동차주차장 · 광장 ·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m^2$	1년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공작물 · 물건 및 시설	농업 · 주택 및 식물 재배	점용면적	1년	1년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기 타	$1m^2$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지가공사 및 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률의 길이, 표시면적등이 1㎡ 또는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광고탑.광고판 및 간판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 → 1,900)

5의2. 위 표 제2호의 점용률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 유지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 5의3. 위 표 제2호의 점용률중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열관에는 작업구 (맨홀).전력구.통신구등이 포함되어,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6. 지하 점용률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 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변상금</u> ----- ----- -----
제2조(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 ----- ----- <u>변상금</u> ----- ----- <u>법 제80조의2</u>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생략) ②부당이득금은 점용료산정기준에 의하여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현행과같음) ② <u>변상금</u> -----
제3조의2(소액점용료 징수체와 및 반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생략)	제3조의2(소액점용료 징수체와 및 반환) ①----- <u>변상금</u> ----- ②(현행과 같음)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생략) 1. ~ 3.(생략) (신설) ②(생략)	제4조(점용료감면) ①(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②(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경 안
1.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 3. (생략) ③(생략) ④부당이득금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 부과징수) ①(생략) ②제1항에 의한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부당이득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담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점용기간이 1년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 2. ~ 3.(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변상금----- --- 제5조(점용료 부과징수)①(현행과같음) ②----- --- 1. ~ 2.(현행과 같음) 3. 변상금 ----- --- ③----- --- ---변상금----- ---
제6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간내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점용료, 변상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생략) (신설)	제7조(점용등의 조정)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의 조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7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
제9조(징수의 위임) ①점용료 및 부당 이득금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유통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삭제)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 ·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부과 ·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이의신청) ----- 변상금 ----- ----- ----- -----

第34編 住宅・建築・道路 第4章 道路 道路法

遇에는 道路의 占用에 關한 工事를 施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境遇에 있어서는 管理廳은 그 工事의 內容과 時期를 道路 占用者에게 미리通知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道路의 占用에 關한 工事는 이를 道路 工事로 본다.

第43條 (占用料의 徵收) ① 管理廳은 第40條의 規定에 依하여 道路를 占用하는 者로부터 占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占用料의 算定基準 등 占用料의 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道(第22條第2項의 規定이 적용되는 國道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으로, 기타의 道路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道路의 管理廳이 속하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93·3·10, 99·2·8 法 5894>

③ 削除 <70·8·10>

第44條 (占用料徵收의 制限)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이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占用料를 減免할 수 있다. <改正 93·3·10, 99·2·8 法 5894>

1. 公用 또는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非營利事業을 위한 경우

2. 災害 기타 特別한 事情으로 본래의 占用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경우

3. 國民經濟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公益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住宅에 出入하기 위하여 通行路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营利目的이 아닌 경우

(全文改正 76·12·31 法 2989)

第45條 (原狀回復) ① 道路를 占用하는 者는 그 占用期間이 滿了되었거나 占用을 廢止하였을 境遇에는 道路를 原狀回復하여야 한다. 다만, 原狀回復을 할 수 없거나 原狀回復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66·8·3, 93·3·10, 99·2·8 法 5894>

② 第40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原狀回復의 경우에 이를準用한다. <新設 93·3·10>

第46條 (添加物件에 關한 適用) 道路를 占用하는 工作物 · 物件 기타의 施設에 對하여 새로 이 道路의 構造나 交通의 障害를 끼칠 物件을 添加하고자 하는 行爲는 이를 새로운 道路의 占用으로 본다. <改正 70·8·10>

第5章 道路의 保全 및 公用負擔

第47條 (道路에 關한 禁止行爲) 누구든지 正當한 事由 없이 道路에 關하여 다음에掲記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주 108)

第34編 住宅・建築・道路 第4章 道路 도로법시행규칙

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7. 96.7.23, 99.9.2>

②삭제 <99.9.2>

제33조 (허가수수료의 정수) ①법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

은 다음과 같다. <개정 96.7.23, 99.9.2>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1천원
3. 법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2만 원

②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수입인지 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도나 시·군·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6.7.23>

제34조 (제결신청서)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결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35조 (과태료의 정수절차) 영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도로수의자부담금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94.12.7 건설부령5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7.23 건설교통부령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9.2 건설교통부령20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점용료·면제대상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도로원표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에 있는 도로원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 114)

第34編 住宅・建築・道路 第4章 道路 道路法

特別市長·廣城市長 또는 道知事(以下監督官廳이라한다)가道路의管理廳이行한處分의取消, 變更, 工事의中止또는其他必要한處分이나措置를命할수있다. <改正 93·3·10, 95·12·6>

1. 管理廳이行한處分이나工事가道路에關한法令이나監督官廳의處分에違反하였을境遇
2. 道路의構造를保全하거나交通의危險을防止하기爲하여特히必要하다고認定되는境遇

第76條의2 (道路에 관한 調査등) 建設交通部長官과 道路의 管理廳은 그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道路의 交通量등 交通情報, 道路의 構造 기타 道路에 관한 사항을 調査하게 하거나 交通量등 交通情報を 道路利用者에게 提供하게 할 수 있다.
(全文改正 99·2·8 法5894)

第77條 (監督官廳의 승인) 道路의 管理廳이나 地方自治團體는 道道路線을 인정·廢止 또는 变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監督官廳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全文改正 99·2·8 法5894)

第77條의2 (手數料의 徵收) ①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1. 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工事의 許可를 申請하는 者
 2.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占用의 許可를 申請하는 者
 3. 第54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運行의 許可를 申請하는 者
- ②第44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의 減免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93·3·10)

第78條 (負擔金등의 強制徵收) ①道路의 管理廳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命令이나 條例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占用料 기타의 負擔金을 납부하여야 하는 者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督促하여야 한다.

②道路의 管理廳은 第1項의 경우에 加算金을 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 國稅徵收法 第21條 및 第22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③道路의 管理廳은 占用料 기타의 負擔金 또는 加算金을 납부하여야 하는 者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全文改正 99·2·8 法5894)

(주 108)

제14편 건설 제2장 토목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징수조례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

[1971. 1. 15]
조례 제223호

개정 1975.12.29 조례 제 437호
개정 1976. 2.18 조례 제 520호
개정 1977.10. 6 조례 제 563호
개정 1982.12. 9 조례 제 873호
개정 1985.12.31 조례 제 1097호
개정 1989. 4.18 조례 제 1260호
전문개정 1994. 4.12 조례 제 1489호
개정 1997. 7. 7 조례 제 1634호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20조의 2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제 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부당이득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회계년도별로 산정한다.

제3조의 2(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 4조(점용료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

(추 1)

제14편 건설 제2장 토목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징수조례

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3.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 및 군수가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 점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④ 부당이득금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 부과징수) ①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분은 허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3. 부당이득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담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추 1)

제14편 건설 제2장 토목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징수조례

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점용료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7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제9조(징수의 취임) ①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71. 1.15 조례 제 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12.29 조례 제 437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76. 2.18 조례 제 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10. 6 조례 제 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12. 9 조례 제 873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편 건설 제2장 토목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정수조례

부 칙 (1985.12.31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18 조례 제1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4.12 조례 제1489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 7. 7 조례 제1634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2 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편 건설 제2장 토목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징수조례

[별표 1]

집용료산정기준료(제3조 관련)

(금액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면적	기간단위	
1 전주, 공중 전화, 송전 탑 기타 이 와 유사한 것	전 주	1개	600 900 24,100
	전주와 유사한 것		
	공 중 전 화		
2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 열관	직경 0.1m이하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직경 0.1m초과 0.2m이하	
		직경 0.2m초과 0.4m이하	
		직경 0.4m초과 0.6m이하	
		직경 0.6m초과 0.8m이하	
		직경 0.8m초과 1.0m이하	
		직경 1.0m초과 2.0m이하	
		직경 2.0m초과 3.0m이하	
		직경 3.0m초과	
		길이 1m	
		1년	150
			300
			600
			900
			1,200
			1,500
			2,250
			3,750
			5,250

제14편 건설 제2장 트목 약주군도로점용및점용징수조례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면적	기간단위		
기타의 관	직경 0.1m이하 직경 0.1m초과 0.2m이하 직경 0.2m초과 0.4m이하 직경 0.4m초과 0.6m이하 직경 0.6m초과 0.8m이하 직경 0.8m초과 1.0m이하 직경 1.0m초과 2.0m이하 직경 2.0m초과 3.0m이하 직경 3.0m초과	길이 1m	1년	200	
				450	
				900	
				1,350	
				1,800	
				2,250	
				3,350	
				5,600	
				7,850	
3. 광고탑, 광고판, 간 판, 시설안 내표지, 현 수막, 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	일시 설치한것 (1월미만 점용)	표시면적 1m ²	1일	100
		기 타	"	1년	15,000
	사 설 안 내 표 시		1개	1년	12,500
	현 수 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일시설치한것	점용면적 1m ²	1일	50
		기 타 의 용 도			100
	아 취	도로 횡 단	표시면적 1m ²	1년	30,000
		기 타			15,000

제14편 건설 제2장 토목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징수조례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면적	기간단위			
4. 주유소, 주차장, 여객 자동차터 미널, 화물터 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 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m ²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3층인 건축물				
		4층이상인 건축물				
	전 입로					
	기 타					
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것			점용면적 1m ²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m ²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3층이상인 건축물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기 타					
7. 노점, 자동 판매기, 상품 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점용면적 1m ²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추 1)

제14편 건설 제2장 토목 양주군도로점용 및 점용정수조례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면적	기간단위	
8. 공사용 판자	일시 점용한것		1일 100
벽, 벽판대기 소동의 공사 용 시설 및 재료, 굴착부 분 기타	기 타	점용면적 1m ²	1년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밀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 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것		점용면적 1m ²	1년 토지가격에 0.02 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 건 및 시설	농업, 주택 및 식물재배	점용면적 1m ²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기 타	1년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등이 1m²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면적, 길이, 표시면적등이 1m² 또는 1m 미만인 경우에는 1m² 또는 1m로 산정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합계면적을 말한다.
 5. 단위면적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예 : 1950원 → 1,900원)
- 5의 2. 위 표의 점용물중 수도관·하수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에는 작업구(멘홀)·전력구·통신구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양카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추 1)

제14편 건설 제2장 토목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정수조례

6. 위표의 제1호에는 수도, 하수도, 가스, 송유, 송열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중 관시설이 아닌 점용물을 포함한다.
7. 위표의 제3호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위 표의 제6호에는 다른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제1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전주, 전주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이외의 점용물
 - 나. 제4호, 제5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 다.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이외의 점용물
 - 라.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일시 점용한 것”이외의 점용물
 - 마. 제10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농업, 주택 및 식물재배”이외의 점용물
9. 위 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10.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14편 건설 제2장 토목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정수조례

[별표 2]

점용료조정산식(제7조 관련)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이상 20%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10}]
20%이상 50%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3/100} + (증가율 - 20/100) × 1/10}]
50%이상 100%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6/100} + (증가율 - 50/100) × 6/100}]
100%이상 200%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9/100} + (증가율 - 100/100) × 3/100}]
200%이상 500%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2/100} + (증가율 - 200/100) × 1/100}]
500% 이상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5/100} + (증가율 - 500/100) × 5/1,000}]

· 지방의 시기화로 나라발전 고향발전
양 주 군

우편번호 / 480 - 011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220 - 66/ ☎ (0351) 820 - 2432 / FAX2439
도로교통과 과장 신 대 영 도로관리담당주사 노 무 광 담당자 전 청 배

문서번호 도교 58710 ~ 518

시행일자 2000. 2. 23

(경유) 제 1안)

수신 내 부 결 재

참조

보존기간	영구	군 수
공개여부	공개	유령수
부 군 수	인증비	기획감사실장 풍 층 478
과 장	이수경	기획법무담당자 김수원
		홍보 담당자 김민경
기 암	★은/청색	도로관리담당 노재상 협조
심사자	김민경	심사 일 20. 2. 23.

제목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로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을 양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조례명 :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나.입법예고기간 : 2000. 2. 22. ~ 2000. 3. 13 (20일간)

붙임 자치법규입법예고 1부 글

양 주 군 수

제2안)

수신 받는곳 참조

제목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로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을 양주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기획감사실장은 군보에 공고 및 개시판 게시하고 읍면장은 개시판에
게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양주군 공고 제 2000 - 59 호

도로점용 및 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2월 일

양 주 군 수

1. 조례제명 : 도로점용 및 점용료 징수 조례(안)
2. 개정취지 : '99년도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법령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 가. 주택을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 감면(제4조)
 - 나. 도로점용료 징수에 있어 종전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제6조)
 - 다. 도로점용허가신청에 있어 종전에는 점용료의 1천분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1천원 수수료 납부(제8조)
 - 라.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에 관한 사항은 삭제(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3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을 양주군수(참조 : 도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성명

양 주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군 ○ 보

제 178 호
2000년 2월 28일 (월)

차 레

임법 예고

- 양주군 공고 제2000-59호 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안) 3

고시

- 양주군 고시 제2000-18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4
- 양주군 고시 제2000-22호 공공시설 입지 승인(변경) 고시 8
- 양주군 고시 제2000-23호 주택건설사업승인 고시 9

공고

- 양주군 공고 제2000-50호 군 도시계획시설 미집행된 시설 낌치별 집행계획 11
- 양주군 공고 제2000-56호 산북취락지구 가로망(소로2-3호선)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 28

회 람									
--------	--	--	--	--	--	--	--	--	--

발행 : 양주군

편집 : 기획감사실

양 주 군 보

제 178 호

입 법 예 고

양주군 공고 제 2000 - 59 호

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2월28일
양 주 군 수

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안)

1. 조례제명 : 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안)
2. 개정취지 : '99년도 도로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동법령과 맞지않는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주택을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감면 (제4조)
 - 나. 도로점용료징수에 있어 종전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가산금징수 및 득축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 (제6조)
 - 다. 도로점용허가신청에 있어 종전에는 점용료의 1천분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1천원 수수료납부(제8조)
 - 라.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징수와 감면에 관한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에 관한사항은 삭제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3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한것)을 양주군수(참조 : 도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성명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 개정

개정구분 : 부분개정

개정이유

도로법의 개정('99. 2. 8. 법률 제5914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99. 8. 6. 대통령령 제6510호)시 도로 점용에 관한 규정이 개선됨에 따라 동법령과 맞지 않는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함(안 제4조)
- 나.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할 자가 납부기간 내에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가산금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 다. 점용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여할 자가 납부기간 내에 점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안 제8조)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 밸류서 : 별첨

- 도로법 제44조(점용료 징수 제한)
- 도로법 제78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 도로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수수료의 징수)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2000. 2. 28. ~ 2000. 3. 18(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없음

기타참고사항

- 현행조례